

동양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학생 및 교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양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이하 “사회봉사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회봉사센터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2.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3. 사회봉사 수요처 조사 및 확보
4. 사회봉사 교육 및 교과목 운영
5. 사회봉사활동 과정관리(희망 학생 접수, 교육, 파견)
6. <삭제 2026.07.01.>
7. 국제 봉사활동
8. 교내 사회봉사 관련단체·학생동아리 활동지원 및 연계활동
9. 관련 대외기관과의 연계봉사활동
10. 사회봉사보고서 발간
11. 기타 사회봉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사회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행정직원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0.13>

제4조(센터장<개정 2011.10.13>)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0.13>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봉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10.13>

제5조(직원, 조교) ① 직원은 본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사회봉사센터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③ 행정조교는 직원의 활동을 보조한다.

④ 직원과 조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회봉사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매년도 주요사업 심의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 계획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5. <삭제 2026.07.01.>
6. 기타 사회봉사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0.13>

④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0.13>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한다. 단,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의장이 당연히 소집한다.

제4장 사회봉사교육과정의 운영

제7조(정의) 사회봉사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이론교육과 봉사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제8조(사회봉사교육과정 운영)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사회봉사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사회봉사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제5장 [삭제 2026.07.01.] ※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

제6장 사회봉사활동의 운영

제11조(사회봉사활동자 구성 및 운영) 사회봉사활동자의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는 본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운영한다. 단,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

- 역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포괄할 수 있다.
2. 사회봉사활동자의 활동지역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사회봉사활동 상황은 별도로 관리, 기록한다.

제7장 보 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사회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직제개편)

부 칙

3. 이 규정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